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1 전동킥보드
- 2 전동이륜평행차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자료제공 : 도로교통공단

구분 / 처벌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 17371호	개정 도로교통법 '21.01.12 공포
시행일	'20.12.10	'21.05.13
법적 지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PM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	20만원 ↓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20만원 ↓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20만원 ↓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20만원 ↓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20만원 ↓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항	음주 운전 (단순 음주)	범칙금 3만원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인명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이용합시다

첫째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둘째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 이용하여 안전 운행

셋째 전동킥보드 주차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지 금지)

* 도로교통법 미준수 시(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대여 시 이용자의 보험보장내역을 '꼭'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합니다.

안전속도 지키기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습니다.

무단방지 금지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무단방지하지 않습니다.

동승 금지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전동킥보드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안전수칙

- ①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돌할 수 있는 곳에서는 노크시 기관지보드를 일정하게 들고 가기
- ② 바퀴가 작아 낮은 테이블이나 낮은 상코너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하기
- ③ 안전기준 K-EDM 이끄는 취미한 제품 사용하기